

국가보훈 장해진단서

장해진단 대상자	성명	생년월일(성별)	① 신분증을 통한 본인 확인란 확인 완료 []	
	주소	전화번호		
전상·공상 등 내용	② 질병명 (병명)	부상(발병)일		

③ 검사소견 및 주요 치료 내용

④ 장해 내용 및 상태
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3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해상태를 진단합니다.

의료기관 명칭	직 인	장해진단 의사 성명	년 월 일
의료기관 주소		의사 면허번호	(서명 또는 인)
		전문의 자격번호	
		전문의 과목	

첨부서류

- 소견서(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해상태를 구체적으로 적은 것을 말합니다) 1부
- 「의료법 시행규칙」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1부
- 그 밖에 방사선 사진 등 국가보훈 장해진단서에 기록된 장해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국가보훈부장관이 질병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각 1부

유의사항 및 작성방법

-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는 장해진단 대상 분야 전문의가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. 대상 분야가 2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분야에 대해서 작성합니다.
- ①란에는 진단의사가 직접 진단 대상자와 대면하여 그 인적사항을 신분증(주민등록증, 기간 만료 전 여권, 운전면허증, 공무원증, 국립·공립대학 학생증, 군무원증, 건강보험증, 외국인등록증 등 국가공인 신분증을 말하며, 진단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학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으로 대체 가능합니다)과 대조하여 진단 대상자가 본인임을 확인한 경우에만 확인란에 √나 ○표시를 합니다. 이 경우 장해진단 대상자는 진단의사에게 본인의 신분증을 보여줘야 합니다.
- ②란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질병 분류에 따른 질병명(병명)을 적습니다.
- ③란에는 치료 기간, 치료 경과, 수술명 및 수술일을 포함하여 적습니다.
- ④란에는 임상증상 등 장해상태를 적고, 필요한 경우에는 도표·그림으로 표시합니다. 다만, 상이등급은 적지 않습니다.